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-138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10. 7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부합동평가 과제로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 세부지표 중 미정비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부합동평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받은 어려운 한자어 순화

| 연번 | 자치법규 명 | 개정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제30조의 제목 “(계리의 원칙)”을 “(회계 처리의 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처리”로 한다. |
| 2 |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| 제6조제6호 중 “양양 밋”을 “계승발전 밋”으로 한다. |
| 3 |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| 제2조제7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 |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자치법규 정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생략 (※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10.6.)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계리의 원칙)”을 “(회계처리의 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처리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 중 “양양 및”을 “계승발전 및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0조(<u>계리의 원칙</u>)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<u>계리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</u>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.</p> | <p>제30조(<u>회계처리의 원칙</u>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처리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 <u>처리</u>----- -----.</p> |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6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<u>양양</u>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</p> | <p>제6조(표창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계승발전</u> 및 ----- ----- -----</p> |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제설·제빙”이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,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<u>미연에</u>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.</p> <p>8. (생략)</p> | 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리</u> ----- ---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|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
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한현진 (☎ 3153-8526)